

03

FTA EXPERTS

- ① 트럼프 관세조치와 2025년 통상환경
- ② 한-필리핀 FTA 원산지 정책 및 우대 관세 적용 지침 발표
- ③ 신통상 무역환경에서의 “원산지”의 중요성과 원산지정보원의 역할





트럼프 관세조치와 2025년 통상환경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들어가며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지 두달 가량 지났지만, 트럼프 관세조치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접경국이면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25%의 관세 부과(4월초까지 시행 연기)를 시작으로, 중국을 대상으로는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마약 문제로 10%씩 두차례 관세를 부과했다. 철강, 알루미늄으로 시작된 품목별 관세는 구리와 목재를 다음 타겟으로 삼았다. 4월초에는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2025년은 트럼프 관세조치가 불러일으킨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는 해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상황은 지난 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며 예견된 것이다. 당시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접전 양상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모든 ‘스윙 스테이트(경합주)’에서 선거하며, 선거인단 투표와 총 유권자 투표 모두 압도적으로 이겨

4년전 패배를 설욕했다. 또한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지킨 것과 동시에 상원에서도 민주당 의석을 뺏으며 양원을 장악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미국 선거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이유는 트럼프 당선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향후 4년간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경영전략 수정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회복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2기의 미국발 공격적 통상조치와 그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국의 조치가 만들어낼 혼란은 예상치 못한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미국 현법상 대통령은 연임, 중임을 포함 두 번만 선출될 수 있기 때문에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임기는 4년 뿐이다. 그러나 첫 임기에서 보여준 전례 없는 관세조치와 미국 우선적 변화무쌍한 정책은 그 과정에서 보여준 변동폭과 예측 불가능성 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에서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8년간 미국은 어떠한 면을 강조했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 미중 패권경쟁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 미국내 제조업 투자 확대, 미국 시각에서 공정무역을 위한 수입규제 강화, 경제안보 측면에서 무역과 투자 통제 강화 등이 일관되게 집행되어 왔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후 정치권력의 주체가 어느 당이든 이러한 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트럼프 관세조치를 중심으로 혼란이 가중될 2025년 통상환경을 조망하고, 어려운 여건 속 경제주체들의 대응 전략 마련에 주목해야 할 부분을 짚어보고자 한다.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방향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적극적인 관세조치를 약속하며,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표현했다. 수입국 입장에서 관세는 세수증대와 국내 산업 보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관세부담을 어느 쪽이 지든 실제 국경간 거래 당사자인 기업에게는 비용이다. 거래자의 비용증가는 수익성 악화를 뜻하며, 가격에 반영할 경우 물가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유세과정에서 구체적 설명 없이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를 도입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크게 우려한 것은 물가를 잡겠다며 물가인상을 초래할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도 있으나, 이러한 관세가 WTO나 FTA 규범과 충돌해 무역질서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관세 도입은 아니다. 비록 그 내용과 영향이 국가간 무역규범과 상충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최소한 미국내에서는 현행법에 근거해 취해지고 있다.



취임 전 언급한 관세조치와 취임 후 실행한 관세조치로 충격과 공포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을 관세에 국한해서 보는 것은 달이 아닌 손가락만 바라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 서명한 여러 건의 행정명령 중 하나로 ‘미국 우선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내걸고 기존 통상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하라고 관계된 모든 부처에 지시했다. 따라서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의 구체적 모습은 4월에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나, 3월초 발표된 연례 대통령의 통상정책 의제(Trade Policy Agenda)에서 제공하는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매년 3월초 USTR이 의회에 보고하며 공개되는 대통령의 통상의제와 무역협정 프로그램 보고서는 당해연도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미국이 체결한 주요 무역협정과 통상 이슈를 망라함으로써, 통상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다. 비록 임기 첫 해의 보고서는 준비기간 부족으로 상세한 내용을 담을 수 없지만, 4년 임기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것에 의미를 갖는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목표는 2년차 보고서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내년 3월 공개될 2026년 통상정책의제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올해 보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의 목표로 ‘생산 중심 경제(Production Economy)’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반복되는 관세조치의 목적을 두고 추진할 감세에 따라 감소할 세수를 메꾸는 수단이다. 상대를 압박해 무역과 외교안보를 아우르는 협상카드다. 심지어 고립주의적 대외정책 수단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하는 관세조치의 궁극적 목적은 미국내 생산확대다. 고임금 일자리와 혁신을 창출하고, 방위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서도 제조업 확대는 필수적이다. 제조업 비중이



늘어나면 중산층이 늘어나고 국내 공급능력 확대로 무역적자도 줄어들 수 있다.

2025년 통상정책 의제에서 주목할 두 번째 특징은 1기에서 강조되었던 무역협정 개선과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이 빠졌다는 점이다. 첫 임기를 시작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심화시키는 잘못된 무역협정을 바로잡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실제로 NAFTA를 개선해 USMCA를 체결했고, 무역적자 주범으로 지목된 한미 FTA도 개정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2026년 USMCA를 검토해야 하고, 원산지 강화 등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나, 트럼프 2기는 1기와 달리 무역협정 개정을 성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보다는 무역상대국의 고율의 관세나 비관세장벽 개선을 관세 압박을 통해 실현하려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특징은 지난 5년간 연례 통상정책의제 보고서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WTO에 대한 기술의 재등장이다. 미국은 2017년부터 상소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통상분쟁 해결에 큰 장애가 발생하고, 다른 협상과 새로운 규범 제정 기능도 크게 떨어진 상태다. 금년 보고서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이의 해소없이 미국은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WTO를 개혁하겠다고 언급하고 다른 회원국도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미국이 WTO 개혁에 적극 나설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이 사전에 충분히 조율되어야 실질적인 WTO 개선에 나설 명분이 생기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금년 보고서에서 WTO를 언급한 것은 WTO의 한계를 밝혀 자국 중심적 통상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 2기 관세조치 경과 및 전망

트럼프 2기의 첫 관세조치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대상으로 국제비상경제수권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다. 1977년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은 전시가 아닐 때 대통령이 국제경제와 관련된 문제로 비상상황을 선포하면 국제금융을 규제하거나, 외국인 자산 및 거래 규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로 적성국이나 미국과 마찰을 빚은 국가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트럼프 1기에서 멕시코를 대상으로 발동해 관세 부과를 시도한 사례도 있다. 현재 조치 중인 관세의 근거가 되는 비상상황은 불법이민과 마약에 대한 국경문제다. 접경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 불법이민자가 미국 영토로 유입되고, 중국에서 제작된 마약이 캐나다, 멕시코를 통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대상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세부과를 시행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두 차례 연기가 되어 대부분의 관세는 부과되지 않고 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10%씩 두 차례 관세가 부과되며 총 2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트럼프 2기 두 번째 관세조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25% 관세조치다.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여부를 조사해 필요시 관세 및 수입제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미 트럼프 1기에 철강, 알루미늄을 대상으로 조치를 시행해 바이든 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있었는데, 관세 도입 후 우리나라를 필두로 캐나다, 멕시코, EU, 일본 등이 미국과 협상해 쿼터 등 예외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이러한 국가별 예외나 면제를 모두 폐지한 것과 알루미늄의 경우 10%였던 관세를 25%로 인상한 것이다. 또한 1기에서 대상이 아니던 철강, 알루미늄의 파생제품(철강과 알루미늄을 중간재로 사용해 완성한 다른 용도의 제품)도 제조에 사용된 만큼 관세부과 대상이 됐다는 점이다. 여기에 품목별 관세 대상으로 언급되었던 품목 중 구리, 목재에 대한 232조 조사를 명령했다. 구리, 목재와 함께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언급되었기 때문에 향후 품목별 관세조치를 확대한다면 상기 제품이 우선 대상으로 유력하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철강, 알루미늄과 함께 트럼프 1기 조사 대상이었으나 최종 조치에서만 빠져, 당시 조사 결과를 업데이트한 것으로 조사가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품목별 관세 외에 취해질 관세는 소위 '상호관세'다. 당초 상이한 관세수준을 동등하게 맞추기 위해 미국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의



고관세와 동시에 비관세장벽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행정명령을 통해 상호관세 부과를 위해 검토할 사항으로 ①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 ② 부가세를 비롯 미국 기업에 부과되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역외세금, ③ 비관세장벽, 보조금,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 ④ 환율 조작, 임금 억제, 중상주의적(mercantilist) 정책, ⑤ USTR이 판단하는 기타 불공정한 무역 관행 등이 제시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에 달한다고 오인된 정보를 밝히기도 하고, 미국에 없는 제도여서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며 부가가치세(VAT) 문제도 다룰 것임을 밝혔다. 또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호관세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관세가 아니라 현행법에 근거해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통상법 301조, 관세법 338조 등에 근거해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74년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해당국과 협의하고 합의하지 못하면 관세부과 또는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은 트럼프 1기부터 광범위한 중국산 제품에 대해 301조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범용 반도체와 조선 및 해운에 대해서도 조치 부과를 앞두고 있다. 1930년 관세법 338조는 타국의 불합리한 규제나 차별대우로 불이익 발생시 최대 50%까지 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30년대 이후 적용된 사례가 없고, 당시에도 관세로 압박해 상대국의 규제와 차별조치를 시정하는데 사용되었다. 무역법 301조는 관세법 338조가 활용되지 않은 반증으로 볼 수 있다. 두 제도 모두 외국의 불공정 또는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에 대응하고, 협상을 통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후에 제정된 유사한 성격의 무역법 301조가 있어 관세법 338조가 활용되지 않은 셈인데, 문제는 조사를 선행하도록 한 무역법 301조와 달리 관세법 338조는 조사 없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관세부과를 강조하는 것은 관세법 338조 활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밖에 1974년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 달러가치 하락을 이유로 15% 미만 관세 부과 또는 퀘터를 도입할 수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에도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향후 의회에서 새로운 관세부과를 위한 법 제정 또는 관세부과가 용이하도록 법을 개정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WTO 가입과 동시에 미국 국내절차상 필요해 도입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폐기 논의가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다. PNTR 폐기가 대중국 관세의 대폭 인상을 담보하지는 않으나, MFN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유사한 목적으로 분류된 국가들에 고율의 관세가 적용 중이며, 매년 의회가 이를 심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큰 부담을 안게 된다.

캐나다와 중국은 미국 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보복에 나섰다. EU도 철강과 알루미늄 25% 관세에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국은 미국이 10% 관세조치를 할 때마다 보복조치를 적용 중인데, 비중이 높지 않은 품목을 대상으로 한 1차 보복과 달리 2차에서는 미국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농산물을 타겟으로 삼았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관세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캐나다와 EU의 보복관세에 트럼프 대통령은 맞보복관세를 시사했다. 아직 상호관세도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 관세 위협이 아닌 실질적인 관세와 보복관세 조치로 시장에서의 혼란은 심화되고 있다.

중국의 공급과잉과 보호무역 확산 위기

중국은 개혁개방과 함께 강력한 제조업 육성정책을 펴왔다. 2000년 WTO 가입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위상을 다졌고, 그 과정에서 설비 증설과 수출 신장으로 이중의 승수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1기에서 시작된 중국 견제는 바이든 정부 들어서 더욱 촘촘하고 강화되었으며,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 시장이 막히고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기위축 속에 자체적인 구조조정 기회를 상실한 체 증설을 지속해온 중국은 일부 업종에서 글로벌 수요를 초과하는 과잉설비를 갖추기에 이르렀다.

중국발 공급과잉 현상은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 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신사업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미국, EU 등 선진국은 물론 멕시코, 브라질, 튜르키예, 인도, 태국 등 신흥국도 중국발 공급과잉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 조치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관세조치와 대중국 우회수입 방지책 강화로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제품은 국내 또는 제3국으로 진출해 우리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 특히 공급과잉(Oversupply)에 더 많은 국가가 대응에 나서 글로벌 보호무역 움직임을 가속화할 경우 수출기업은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

중국의 '3대 新산업'이 급성장하며 과거 철강 등 전통 제조업 일부에서 발생했던 공급과잉 문제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으로 확대고 있다. 해당 분야는 대규모 산업보조금 지원 등 정부 주도의 육성정책으로 기술과 규모 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는데, 내수 침체로 공급이 국내 수요를 월등히 초과하자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은 상품이 저가로 해외시장에 수출되며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미국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전통적 무역구제 조치와 더불어 232조 및 301조 등 수입제한 조치를 활용 중이다.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외에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국의 불공정 공급과잉을 문제 삼으며 전기차에 대한 301조 관세를 대폭 인상(기존 25%→100%)하고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등 전략 품목으로도 301조 관세를 확대했다. EU는 정치적 부담이 덜한 기업 대상 반덤핑조치를 활용해왔으나, 그래도 대응이 부족하자 정부 보조금을 공급과잉 원인으로 지목하며 보조금 조사를 확대했다. EU집행위는 저가 중국





전기차 수입이 급증하자 직권으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실시하고 태양광, 풍력터빈 등에 대한 덤핑·보조금 조사도 진행했다.

중국은 주요국의 중국산 수입제한 움직임에 맞서 보조금과 공급과잉 인과관계 의심을 반박하고, 보복조치가 가능하도록 관세법을 제정했다. 중국의 신산업 성장은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술 혁신, 공급망 개선, 시장 경쟁 등을 통해 이룬 것이라며 항변하고 있다. 여기에 2024년 관세법을 제정해 중국에 고관세를 부과한 국가의 상품에 동일 세율로 관세를 부과하고, 국가의 정책이 중국의 정상적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를 허용하고 있다. 핵심광물 수출통제제도 정비와 함께 관세법 제정은 중국이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라 법에 근거해 체계적인 대응 준비를 마쳤음을 의미한다.

나가며

불확실성은 기업이 가장 꺼려하는 리스크다. 경영환경이 늘 좋을 수는 없다. 안좋은 환경과 그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면 기업은 그에 맞춰 경영전략을 수정하고 대비한다. 그러나 시장을 예측하기 어렵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시행시기를 알 수 없다면 기업은 투자시기를 쉽사리 결정하기 어렵다.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투자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위기에 봉착하게 만들 수 있다. 취임 후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조치는 전격 도입과 연기, 추가 관세와 보복, 그리고 불과 몇 시간만에 취소를 반복하며 렉비공 같은 행보를 보였다. 세계 최대시장이자 수익성 높은 시장인 미국은 우리 전체 수출에서 중국과 함께 1,2위를 다투만큼 중요한 시장이다. 이러한 시장의 불확실성은 수출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수출에도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트럼프 2기를 관통하는 통상정책의 목표는 제조업 회복이다. 2차 대전과 냉전 이후 제조업이 약해져, 원천 기술과 첨단 R&D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 등 핵심 산업과 식품과 보건의료품까지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올라간 미국은 모든 수입을 대체할 수 없을지라도 현재보다는 자금 비중을 높이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지형을 떠나 공통사항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제조업 경쟁력 회복과 국내 생산 확대를 달성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는 산업보조금을 선택했고, 이제 트럼프 2기는 관세를 꺼내들었다. 올리기는 쉬워도 내리기는 어려운 세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미국의 관세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관세는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낼 수 있으나, 장기화되면 그 효과가 약해지고 부작용은 커진다. 중국과 패권경쟁하는 미국 입장에서 대중국 관세는 불가피하지만, 철강 관세만 놓고봐도 미국 철강산업 경쟁력이 제고되었다는 평가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관세로 가격이 지지된 미국 철강사의 수익성은 개선되었지만, 수요업체는 비용 증가로 오히려 불리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2기 다양한 관세는 하나의 목표 아래 취해지고 있으나, 조치의 근거법이 다르고 그에 따라 대응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협상과 합의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하고, 통상정책의 목적이 미국 제조업 강화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MAGA)이라면 그에 맞춰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4년 임기, 2026년 중간선거로 취임하자마자 관세조치에 속도를 낼 수 밖에 없는 트럼프 정권의 정치적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고, 감세와 투자유치 분위기에 따른 주정부의 인센티브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비용은 높고 효율은 상응하지 못했던 사례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혼란의 시기를 극복해낸 기업이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기업이 트럼프 관세 파고를 넘어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필 FTA 원산지 정책 및 우대 관세 적용 지침 발표



형민혁
KOTRA 마닐라무역관 대리



필리핀 관세청(Bureau of Customs, 이하 BOC)이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한-필FTA)에 따른 우대 관세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2024년 12월 31일 발효된 한-필 FTA를 활용해 필리핀 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FTA 발효 후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가공식품,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리핀 관세청의 지침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한-필리핀 FTA 발효와 필리핀 관세청 지침 발표

한-필 FTA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으로, 자동차·전자·가공식품·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단계적인 관세 철폐 또는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필리핀 관세청은 이번 FTA 발효를 계기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우대 관세 적용 지침을 마련했으며, 우리 기업들이 절차를 준수할 경우 필리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지침은 원산지 증명과 공인 수출업체(AEO, Authorized Exporter) 등록 제도를 강조하는 등 FTA를 활용하려는 기업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한-필 FTA 이행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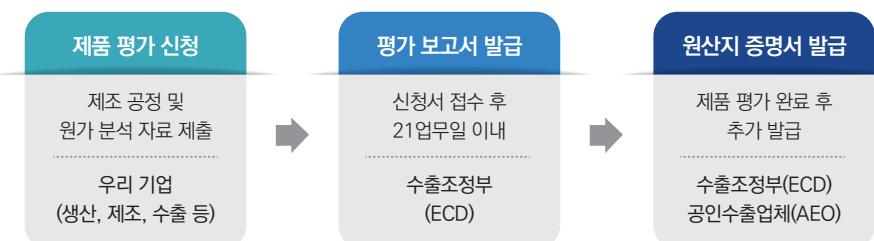
[자료 : 필리핀 관세청(BOC)]

2. FTA 우대 관세 적용 절차: 제품 평가와 원산지 증명

한-필 FTA의 우대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우리 기업은 필리핀 관세청 산하 수출조정부(Export Coordination Division, 이하 ECD)에 제품 평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제품 평가 신청 시 기업은 제조 공정 설명서, 원가 분석 자료, 원자료 명세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ECD는 신청서 접수 후 21 근무일 이내 제품 평가 보고서(Product Evaluation Report, 이하 PER)를 발급한다.

〈제품 평가 신청 절차〉



제품 평가를 완료한 기업은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한다. CO는 ECD가 직접 발급한 것 또는 공인수출업체(AEO)가 작성한 원산지 선언서(Origin Declaration)가 해당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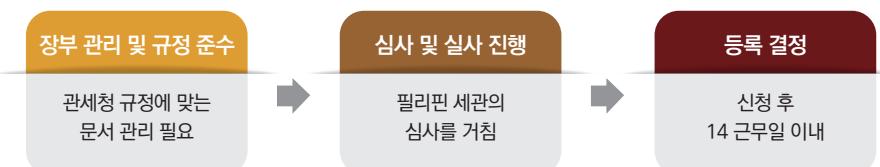


필리핀 관세청은 모든 신청 과정을 디지털 포털을 통해 처리하며, 제출된 서류를 철저히 검토한 뒤 CO에 서명과 도장을 날인해 최종 발급한다. CO를 발급받지 못한 기업은 FTA 우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필리핀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CO 발급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3. 공인 수출업체 등록(AEO)과 절차 간소화

필리핀 관세청은 한-필 FTA를 활용하여 필리핀에 수출을 지속하려는 우리 기업에게 공인 수출업체(AEO, Authorized Exporter)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공인 수출업체로 등록된 기업은 원산지 증명서(CO)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원산지 선언서(Origin Declaration)를 작성해 관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공인 수출업체 신청 절차〉



AEO 등록을 위해 신청기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필리핀 관세청의 요구사항을 준수한 기업만이 등록 가능하다. 주요 요건은 정확한 장부 관리,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세관 규정 준수 기록 등이며, 등록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14 근무일 이내에 공인 수출업체로 승인받을 수 있다.



〈공인 수출업체(Approval Exporter) 등록요건〉

등록 요건	승인 기준	처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 작성 BOC 등록 증명서 승인된 PER (해당 시) 생산업체 선언서 (중간 거래자의 경우) 서명권자 목록 및 서명 표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 이상 거래 기록 보유 세관 규정 준수 기록 정확한 장부 및 기록 관리 원산지 선언 관련 전문인력 배치 모니터링 및 실사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접수 후 14 근무일 이내 검토 후 승인여부 결정

[자료 : KOTRA 마닐라무역관 자체종합]

AEO 등록 제도는 한-필 FTA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일반 기업들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공인 수출업체로 등록된 기업은 자체적으로 원산지 선언서를 발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필리핀 관세청은 AEO 등록을 통해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들이 보다 쉽게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4. 한-필 FTA vs 기존 협정: 차별점과 활용 전략

한-필리핀 FTA는 기존의 ASEAN-한국 자유무역협정(AKFTA),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과 비교했을 때 더욱 유리한 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필 FTA는 필리핀의 바나나, 가공식품, 전자제품 등의 수출품목과 한국의 자동차, 플라스틱, 가공식품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관세 인하를 추진해 양국 간 교역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필 FTA와, AKFTA, RCEP 비교표〉

항목	한-필 FTA	AKFTA	RCEP
협정 범위	양자 협정(필리핀-한국), 특정 산업 부문에 초점	다자 협정(ASEAN-한국), 보다 넓은 산업 부문 포함	메가 지역 협정, 상품, 서비스, 투자 모두 포함
원산지 증명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 증명서 (Form PH-KR) 공인 수출업체의 원산지 선언 	원산지 증명서 (Form AK) 필요	원산지 증명서(RCEP Form) 필요
원산지 증명 유연성	증명서와 선언 중 선택 가능, 수출업체에 더 많은 옵션 제공	원산지 증명서 (Form AK) 필수	여러 국가에 적용 가능한 원산지 증명서 활용



항목	한-필 FTA	AKFTA	RCEP
공인 수출업체 제도	공인 수출업체 제도를 통해 원산지 선언 발급 간소화	공인 수출업체 제도 없음	간소화된 원산지 기준 적용 가능
원산지 기준 (RO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자 맞춤형 규정 제공 누적 원산지 규정 없음 	누적 원산지 규정으로 ASEAN 및 한국 원재료 활용 가능	15개국 통합 원산지 기준 적용
서류 제출 방식	관세청 온라인 포털을 통한 제출, 하드카피 병행 필요	인증 기관에 수동 제출	온라인 처리 권장, 국가별 유연성 허용
우선 부문	바나나, 가공식품, 전자제품 등 필리핀 주요 수출품목에 초점	산업 및 농업 상품의 단계적 관세 인하 포함	상품, 서비스, 투자 부문에서 포괄적 적용
모니터링 및 준수	공인 수출업체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 및 공장 방문 포함	표준 세관 절차 적용, 별도 모니터링 없음	회원국 간 조화된 세관 협력 기반 검증
수출업체 지원	공인 수출업체 인증을 통해 간소화된 절차 제공	수출업체 지원 제도 없음, 일반 서류 요구	통합 원산지 규정으로 무역 간소화

[자료 : KOTRA 마닐라무역관 자체종합]

기존 AKFTA 및 RCEP과 비교했을 때, 한-필 FTA는 원산지 증명 방식의 유연성을 강화하여 기업들이 CO와 공인 수출업체 원산지 선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다 폭넓은 품목에서 추가적인 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전략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5. 원산지 검증 절차 강화와 기업의 대응 방안

한편, 필리핀 관세청은 FTA 우대 관세 적용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 검증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원산지 관련 서류를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하며, 필리핀 세관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서류 제출 및 현장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원산지 검증 절차〉



원산지 검증 강화는 FTA의 악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기업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원산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필수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검증 요청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시사점

한-필리핀 FTA 발효와 함께 필리핀 관세청의 우대 관세 적용 지침이 발표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필리핀 시장에서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다만, 제품 평가와 원산지 증명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필리핀 관세청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공인 수출업체(AEO) 등록을 활용하면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필리핀 시장을 장기적으로 공략하려는 기업들은 AEO 등록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필리핀 관세청이 원산지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FT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신통상 무역환경에서의 “원산지”의 중요성과 원산지정보원의 역할



송경은
한국원산지정보원 연구기획실장



2025년 글로벌 석학들의 경제전망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미국의 고질적인 무역적자 해소 및 재원 확보를 위해 경제 안보 및 위협, 공급망 등을 앞세워 보복관세 및 상호관세 부과 등 보호주의 통상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환경이슈를 선점하고자 하는 EU는 2025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전환기간을 마무리하고 ESG 기반의 통상 규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의 수출입 기업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 필자는 주저없이 “원산지”를 꼽고 싶다. 미국의 보호주의적 통상기조와 EU 중심 환경규제에서 직접적인 정책수단은 “관세”이며, 관세부과의 기준은 물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이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새로운 통상 환경에서 우리 기업이 “원산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기업 애로 및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원산지정보원이 2025년 계획하고 있는 지원 분야와 역할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미CBP 원산지판정 사례 정보의 중요성 강화

트럼프는 60~100%의 대중 고관세 부과를 공약해 왔으며, 1기보다 한층 더 강화된 관세정책이 실현되고 있다.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미국은 「1974년 무역법」 제301조¹⁾에 근거, 기존 중국에 부과한 보복관세를 캐나다, 멕시코까지 확대하고 있다. 보복관세는 특정국에 대상으로 부과되므로 우리와는 무관해 보일 수도 있지만, 미국의 원산지판정 기준에 따라 우리 제품도 고관세 대상 품목이 될 가능성이 있다.

〈표 1〉 미국의 對중국 보복관세 부과 대상

구분	1차	2차	3차	4차
품목수	818개	279개	5,745개	3,250개 (추가 555개)
주요 품목국	IT 및 기계류 (HS 코드 84~90류)	설비 및 장치류 (HS 코드 27~90류)	농축산물 및 화학/전자제품 등 (HS 코드 02~97류)	육류, 신발, 스마트워치 등 (HS 코드 01~97류)
총금액	약 340억 달러	약 160억 달러	약 2,000억 달러	약 3,000억 달러
관세율	25%	25%	초기 10%에서 이후 25%로 조정	초기 15%에서 이후 7.5%로 조정
발효일	2018. 7. 6	2018. 8.23	2018. 9.24	2019. 9. 1

자료 : <https://ustr.gov> 참고하여 작성

주 : 4차 품목의 일부는 무역합의로 무기한 연기

보복관세는 최종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그 판정 기준은 美연방 규정집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따른다. 해당 규정에서는 2개국 이상 복수 국가에서 제조 및 가공한 상품의 경우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의 원칙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질적 변형이란, 중간재·부품 등 투입된 재료와 구별되는 품명(Product), 용도(Use), 특성(Character)을 가진 새로운 완제품으로 변형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미국 CB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는 실질적 변형여부를 개별 상품별로 검토하고 있으며, 결정 사례를 통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1)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반도체와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 전기차용 배터리, 핵심광물, 의료품 등 전략 품목에서 중국산 물품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번 조치에 따른 관세 인상 대상 물품 규모는 연간 180억 달러(약 24조6240억 원) 수준으로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인상('24.5.14.)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으로 생산된 제품이라도 투입된 중국산 원재료와 국내 생산 완제품을 상호 비교했을 때, 새로운 품명·용도·특성을 가진 제품으로 변형되지 않았다고 미측이 판정할 경우 해당 제품은 ‘중국산’ 고관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는 중국과 인접한 우리나라가 중간재 교역 및 제조 공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루고 있는 만큼, 미국의 원산지 판정에 따라 우리제품도 “중국산” 고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한국-중국 간 연결공정을 거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미측의 원산지판정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산지판정은 기존 CBP 결정사례 등을 참고해 판정가능하므로, 한국원산지정보원은 CBP 원산지사전심사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수출 기업이 원산지판정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원산지판정 해석·적용이 이전보다 보호주의 기조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동향 연구·모니터링은 국내 수출 기업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이다.

2. 통상협상의 재협상 대비 : 원산지기준 도입 등

트럼프 2기,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무역적자 해소를 목표로, 한-미 FTA 재협상은 주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특히 “역내산 원산지”요건 강화를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이미 트럼프 1기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경험하였다. 한-미 FTA는 2012년 3월 발효되었으나, 2018년 9월 재협상에서 개방 수준 및 원산지기준이 미국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1기 재협상에서 상품양허의 경우 한국산 화물자동차(기준세율 25%)²⁾에 대한 미국의 관세 철폐 시기는 기존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연장(10년 균등철폐→기준관세 유지후 30년차 철폐)되었다. 또한, 원산지기준 분야는 미국산 제품의 특혜 수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섬유·의류 분야 원산지기준 조정수단을 추가 확보하였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미 FTA에서 섬유제품은 엄격한 원사기준(yarn-forward rule)을 채택하고 있다. 즉, 원재료인 섬유(fiber), 원사(yarn)부터 역내산을 사용하여 역내에서

2) 미측 6개 품목(기준관세 25%) : 87042100(디젤/5톤이하), 87042250(디젤/5~20톤), 87042300(디젤/20톤초과), 87043100(가솔린/5톤이하), 87043200(가솔린/5톤초과), 87049000(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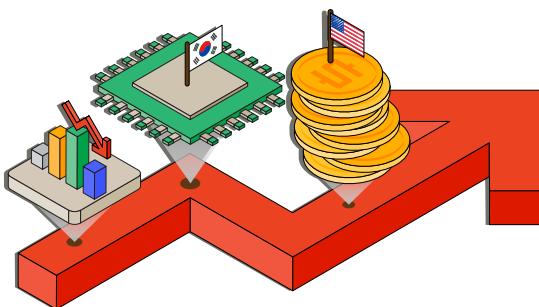


생산해야 원산지로 인정된다. 그러나 재협상 결과, “미국 내 업계 요청 등 국내 절차에 따라 자국산 섬유원료·원사 조달이 어렵다는 결정될 경우, 신속히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실제 2024년 8월, 역내산 구리암모늄 레이온 원사의 공급 부족을 이유로, 역외산 원사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5804호의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 자국의 실익이 반영된 대표적 결과다.

한편, 트럼프의 향후 통상협상에 대한 향후 조치는 NAFTA를 업그레이드 한 USMCA의 재검토 방향에서 참고할 수 있다.

2018년 10월 NAFTA, 즉 북미 3개국의 무역협정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 USMCA)’으로 개정되었다. 이 협정에서는 디지털 무역, 환경, 노동 등의 조항 신설되었으며, 원산지기준, 금융서비스, 지식재산권 등의 내용이 강화되었다. 특히 자동차 및 부품의 원산지기준이 기존 역내부가가치비율 62.5%에서 75%로 상향되었으며, 북미산 철강 및 알루미늄 구매요건, 노동부가가치 기준이 추가되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NAFTA 재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자동차의 역내 원산지 부품 비율을 기존 85%로 상향(현행 75%)할 것을 주장하고,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할 것을 요구(2017년 10월, 제4차 협상)했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한-미 FTA에서도 부가 가치기준 상향 등 엄격한 원산지 기준 도입 관련 추가적인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미측은 현재 USMCA 적용에 있어서도 원산지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고 있다. 일례로 USMCA 자동차의 원산지규정은 역내부가가치기준 75% 적용시, 필수 조건으로 핵심부품이 원산지일 것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즉, 역외산 재료를 포함한 핵심 자동차 부품³⁾이 역내산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전체 완성 차량에 대해서 USMCA(무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은 동조향을 연계하여, 완성차의 원산지재료 인정비율 적용시 투입되는 핵심 자동차 부품에 대해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가 아닌 일부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자동차 특혜적용을 무력화하고 있다. USMCA 분쟁해결 패널이 관련 이슈에 대해 보다 완화된 기준을 주장하는 멕시코·캐나다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미국은 여전히 자국에 유리한 자동차 원산지규정 해석을 고수하고 있다.

〈표 2〉 USMCA의 자동차 원산지기준 적용 관련 각국 주장

구분	핵심부품의 <u>북미산</u> 기준 75% 조건 충족시 자동차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방법
멕시코·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의 역내가치비율 산정시 해당 부품 가치를 100% 북미산으로 간주 주장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자동차의 역내가치비율 산정시 해당 부품의 가치를 75%만 북미산으로 간주 <p>☞ 자동차의 모든 개별 부품을 기준으로 계산해 북미산 75% 조건 충족시 원산지기준 충족</p>

자료 : <https://ustr.gov/> 참고하여 작성

이러한 미국의 원산지기준의 강화 기조는 한-미 FTA 재협상에서도 원산지규정이 더욱 엄격하게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며,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은 USMCA 원산지기준 재협상 결과를 분석하여 미국의 한-미 FTA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 원산지결정기준 적용·해석과 관련한 통상 분쟁을 모니터링하여 국내 수출기업에 신속히 제공하고자 한다.

3) 핵심부품 : 엔진, 변속기, 차체 및 샐리, 차축, 서스펜션 시스템, 조향 시스템, 고급 배터리 등

3. 한-미 FTA 특혜 축소 수단으로 원산지 검증 활용

트럼프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저가 제품들을 차단하고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보편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측의 脱중국 공급망 구축 및 자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보호주의 조치는 관세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한-미 FTA의 특혜관세 활용 유인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FTA 활용에는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이라는 위험요소가 항상 뒤따른다.

미국은 무역적자국인 한국에 대해 고관세 부과외에 기존의 FTA 특혜적용 품목의 원산지 조사, 즉 엄격한 검증을 FTA 약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미 FTA에서 채택한 직접검증방식은 수입국 세관이 해외수출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출자의 부담이 상당히 크다. 그러나 이 방식은 우리 관세당국이 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에 대한 사전적·직접적 행정점검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2025년은 미국의 원산지검증·조사 확대에 대비해 기업의 철저한 원산지관리 대응 역량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한국원산지정보원은 對미 수출기업이 검증요청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의 원산지관리 교육 및 원산지관리 시스템 보급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리고 對미 수출기업의 72.7%가 EU에도 동시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바, 한국 원산지 정보원은 관세청의 인증수출자 제도⁴⁾ 사후관리를 점검·지원하여 기업의 원산지관리 자율 준수 능력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하고자 한다.



4)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RCEP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일례로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 이상의 수출시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6000유로 이상수출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히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 한다.



4.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원산지 정보 관리

2023년 10월부터 도입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알루미늄, 철강 등 EU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EU-ETS(EU 배출 권 거래제) 체계와⁵⁾ 연계되어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CBAM은 EU 역내 시설에서 생산된 동일 상품이 부담하는 탄소 비용과 동일한 수준의 비용을 역외 수입 상품에도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취합하고 인증서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는 EU 역내 수입자이지만, EU 역외 수출자도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배출량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간접적인 의무를 지게 된다.

CBAM 대응의 핵심은 철강, 알루미늄과 같은 탄소집약적 제품의 원재료 원산지, 탄소 배출량의 투명한 관리에 있다. 탄소배출량 관리도 결국 “원산지”와 밀접하게 연관된 영역에 있다.

CBAM은 공급망을 통해 누적된 원재료의 탄소배출 정보를 최종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FTA 원산지 정보의 유통 과정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착안하여 한국원산지정보원은 현재 운영중인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FTA-PASS)에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 산출 등 정보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우리나라 중소 제조·수출기업의 EU CBAM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5) EU-ETS(Emission Trading System)는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 기업에게 매년 배출허용량(배출권)을 유·무상으로 부여하고, 기업별로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의 시장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5. 맷으며 : 신통상 무역환경 속 원산지관리의 중요성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전쟁과 ESG 규제로 요약되는 신통상 무역환경에 원산지가 그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수출기업들이 원산지관리에 어려움이 없는지 점검하고, 주요 수출국의 경제·통상 정책수단인 관세와 원산지 관련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원산지 분야 전문기관으로 지금까지 주력해 온 FTA·원산지 관련 관세율, 품목분류, 원산지판정 분야에 더해서 2025년에는 보호무역과 ESG 통상규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연구 및 지원사업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주요 사업이 우리 기업들의 원산지 관련 통상 애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